

『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0월 20일

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투자통상과장 유 익 수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는 '15. 4월 산업부의 3D프린팅 대경거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,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본 공모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내 「대경거점센터」를 운영하고 있음
- 이에 수행기관의 원활한 거점센터 운영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

- 위 치 :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, 금오테크노밸리 내
- 사용주체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
- 감면기간 : '17. 1. 1. ~ '19. 6. 30. (30개월)
- 사용면적 : 724.5m²(1층 535.5m², 2층 189m²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시행령,

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
육성에 관한 법률」

○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개요

- 위 치 :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, 금오테크노밸리 내
- 규 모 : 3,882.9m², 지상1층 ~ 4층
- 건 립 비 : 35.7억원(도11, 시 24.7) ※ 준공일 : '16. 2. 29
- 사업내용 : 3D프린팅 센터구축, 연구개발, 기업지원, 인력양성 등
- 운영방법
 - 건물 운영 및 관리: 구미시(투자통상과) 직접운영
 - 3D프린팅 대경거점센터 운영: 한국생산기술연구원(수행기관)

위치도

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○ 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

-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, 3D프린팅 대경권 거점센터 운영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센터 내 사용 공간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, 3D프린팅 관련 장비와 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, 기술 확산을 통한 지역 사업 다각화 등 기업지원 역할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